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201565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20156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합5426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항소인망 E의 소송수계인

1. I

2. B

3. J

4. K

5. L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변론 종결2020. 10. 29.

판결 선고2020. 11. 12.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합54264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 및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망 E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망 E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9. 3.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에게, 피고 I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J, K, L은 위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3. 25. 접수 제7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망 E와 피고 B 사이에 주문 제3의 가항 기재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피고 I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J, K, L은 위 토지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3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망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망 E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E"를 "망 E"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망 E의 상속관계

망 E는 2019. 8.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I과 자녀들인 피고 B, J, K, L이 있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19. 3. 22. 망 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 145,802,787원을 전부 변제하는 한편,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어 피고 B은 2019. 3. 25. 망 E와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금 2억 4,000만 원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 B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에게 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적어도 이 사건 매매예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11,921,721원 상당 부분(피담보채무 변제액 145,802,787원 중 이 사건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과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A의 신용보증사고가 2019. 3. 8. 발생하였는데,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인 2019. 3. 25. 자신의 모친인 망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망 E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3. 25. 접수 제761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먼저, 망 E는 2019. 3. 22. 피고 B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M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M는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A의 직원으로서 A에 대한 채권자일 뿐이고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을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8, 19,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M가 A에 대해 실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피고 B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망 E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8. 5. 1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망 E는 2019. 3. 22. 피고 B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G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변제 등으로 145,802,787원을 상환하였다.

설령 피고 B이 망 E에게 2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① G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를 2억 9,40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를 8,900만 원으로 대략 산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억 4,525만 원에 달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위 차용금채무액을 상회하는 점, ② 피고 B이 G에 변제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등은 145,802,787원 상당이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상응하는 피담보채무액은 더 적은 금액인 점(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111,921,721원 상당에 불과하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2018. 3. 25. 망 E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매매예약금 2억 4,000만 원으로 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모두 모아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소멸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친 망 E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예약 전부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망 E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망 E는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3. 25. 접수 제7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다만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소송수계 및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망 E에 대한 부분을 변경한다[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부분은 등기절차상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동일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참조), 피고 B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 B의 위 지분에 관한 가등기말소의무가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의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판사이재신

판사김영현

별지